

# 현 시점에서 산업용 LNG에만 특소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가?



한봉근

SK(주)정책협력팀장

산업용 LNG에 대한 특소세 인하 및 중유에 대한 특소세 신규부과 등 Inter-Fuel 경쟁관련 양에너지원간 첨예한 대립은 1999년말 정부에서 중유에 특소세 부과하려고 했던 시점부터 2000년 에너지세제개편 논의 및 2001년 7월 에너지세제개편 시행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LNG 및 중유간 경쟁 및 세제형평성 문제 관련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현재 국회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용 LNG 특소세 인하관련 문제점 및 정유업계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산업용 LNG 특소세 인하는 총체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종장기 에너지세제개편 원칙에 위배

정부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의 개편을 목적으로 1년 여간의 국회, 정부,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중유에 대한 특소세를 2001.7월부터 2006.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에너지세제개편안을 확정하여, 2000.12월 국회 동의를 거쳐 대외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간 업계로서는 정부 및 국회의 에너지세제개편 정책만을 믿고 생산, 수급 등의 주요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일부 유종의 세율을 재변경한다는 것

은 정책의 일관성 저해 및 민간기업의 사업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즉, 중유 특소세 인상규모(20W/l) 및 시기('01.7~'06.7)는 당시 경쟁연료인 중유와 LNG간의 가격, 수급, 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각계의 합의를 통하여 확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경쟁연료인 LNG 특소세를 인하하는 것은 정부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LPG,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여타 석유제품에 대한 세제정책의 재검토 및 동반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경쟁에너지원간 시장경쟁 자율성 확보 필요

경쟁 에너지원간 원가차이에 따른 가격경쟁력 차이를 정부가 세금으로 원가가 높은 에너지원에 세금을 감면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자율/공정경쟁 원칙을 심히 훼손하고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유에서 LNG로의 수요전환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등 상호 경쟁이 치열한 현 시장상황에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세금을 인하하여 특정 에너지원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LNG특소세를 굳이 인하하지 않아도 세제개편이 완료되는 2006.7월에는 LNG대비 중유세금이 더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LNG특소세를 인하하는 것은 전술한 같이 경쟁에너지간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단기적인 정책대안에 불과합니다.

〈표 1〉 산업용 LNG 및 중유 수요 추이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증감률(%)
중유(천㎘)	66,650	55,083	62,420	56,322	50,087	△6.9
LNG(천톤)	1,043	1,394	1,968	2,681	2,990	+30.1

〈표 2〉 LNG 및 중유 총세금 비교

	특 소 세	LNG 세금(A) (W/m³)	B-C유 세금(B) (W/l)	열량당 세금(W/천Kcal)		차 이(A-B) (W/천Kcal)
				LNG 세금(A)	B-C유 세금(A)	
현 행	LNG: 40W/kg B-C유: 3W/l (~'02.6)	46.29	26.07	4.41	2.63	1.78
	LNG: 40W/kg B-C유: 20W/l ('06.7~)	46.29	45.62	4.41	4.60	△0.19

\* 열량 기준 : B-C유 9,900 kcal/l, LNG 10,500 kcal/m³

\*\* LNG 및 B-C유 세금 : 관세+부과금+특소세+교육세+기타(LNG 가스안전기금, B-C유 품검수수료)

### 산업용 LNG특소세 인하는 철강산업 등 특정산업만 지원

산업용 LNG특소세 인하는 철강산업 등 특정산업에만 혜택을 주어 여타 중유를 사용하는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LNG 보일러 교체 등 비용 문제 및 투자비 회수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LNG로의 연료 전환이 어려운 반면, 대기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기업이미지 등을 감안하여 LNG로의 연료전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산업용 LNG에만 특소세를 인하하는 것은 중유를 사용해야만 하는 대다수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유발합니다.

또한, 산업용 LNG인하시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가시적인 혜택은 거의 없고 대부분 특정 산업의 연료비 절감 혜택만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휘발유 부과되는 높은 세금비중(70%)에 따른 소비자들의 높은 불만을 감안할 경우, 정부가 LNG특소세 인하 등 세금을 인하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면 특정산업에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휘발유 등의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LNG 사용 증대는 환경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LNG 사용 증대에 따른 국가 전체적인 비용증대 등 Efficiency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

우리나라는 사용에너지 전량을 수입해야 하는 세계 3위의 수입국이자 6위 소비국으로서, 막대한 규모의 외화가 소요되는 에너지 수입·사용에 Efficiency측면의 접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 세금 면제 등을 통한 중유의 LNG로의 수요 전환은 궁극적으로 중유의 국제가 하락에 따른 저가 수출을 촉진하고, 상대적인 고가인 LNG의 수입을 장려하여 국제수지 악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에너지수입을 유발합니다.

추가적으로 중유는 원유 도입후 국내 가공절차 거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내 수입가격이 LNG대비 저가임에 따라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유발합니다.

또한, 중유 소비는 현재도 수입소요가 많은 나프타, 등유 등 경질유 생산에 기여하여 해당 유종의 수입을 그 만큼 감소시켜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가) 불필요한 에너지 추가 수입

LNG(A)	원유(B)	차이(A-B)	'01년 중유수요	에너지 추가수입액
29.14\$/B	27.04\$/B	2.1\$/B	128,009천Bbl	269백만\$

\* LNG : 2000년 도입실적 259.60\$/톤(Bbl) 환산계수 8.91)

\*\* 원유 : 2000년 도입실적 27.04\$/B

(나) 산업체 기존 B-C유 보일러 등의 설비 사장 및 신규 LNG설비 비용 발생 등 국가 전체적인 중복 투자 문제

- 신규 LNG 보일러 설비 8억원 소요(연료 15,000 Bbl/月 사용 기준)

### **중유 공급과잉 심화에 따른 정유업계 경쟁력 악화 및 국내 에너지 수급문제 유발**

중유는 석유제품의 연산품 특성에 따라 일정 비율로 생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인해 공급과잉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국내 석유산업의 경영 여건을 크게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휘발유 등 여타 석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저해할 것입니다.

정유업계도 이 같은 중유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 중질유 분해·탈황시설과 같은 고도화 시설 건설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나, 여기에는 막대한 투자비 및 최소 5년이라는 장기간의 건설기간 등이 소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LNG의 특소세 인하는 중유 공급과잉을 더욱 심화 시킬 수 밖에 없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저해할 것입니다.

기타 LNG의 경우 인수기지의 한계로 인한 수급 Unbalance 및 비상시 비축능력 한계가 있는 반면, 석유제품의 경우 1, 2차 Oil Shock와 같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축능력을 확보하여 국가 에너지 Security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중유의 LNG로의 수요전환에 앞서 국가 위기 관리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있어서도 단순히 LNG 등 청정연료로의 전환이 능사가 아니라, 기술 개발 Incentive 차원에서 중유를 지속 사용하는 것도 환경오염방지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국내 산업용 수요를 LNG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과거 중유 등 석유제품이 석유사업 기금을 통하여 석탄 퇴출비용 및 LNG배관망 건설비용 등을 지원한 바와 같이 중유가 시장에서 무리없이 퇴출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시간과 정책적 지원/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LNG특소세 인하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 전체적인 관점, 에너지세제개편 원칙, 여타 에너지 소비자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LNG 특소세 인하가 필요하다면 대체연료인 중유의 원활한 퇴출 방안 및 여타 에너지와의 세제형평성이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